

#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 심사보고서

1997. 3. 14  
내무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7년 3월 6일

· 회부일자 : 1997년 3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5회 임시회

· 제3차 내무위원회(1997. 3. 14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심의의결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유태무)

가. 제안이유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('97. 1. 1시행)됨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회 직명과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관의 직명을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·시행에 따른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의 직명변경(제2조 제3항)
  - 위원 : 내무국장 → 문화관광국장으로

○ 다른 조례의 개정

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중 기금운용관의 직명변경  
(제8조)

- 기금운용관 : 내무국장 → 문화관광국장으로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오건영)

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
이는 충청북도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설치운용의 기금운용관에 대한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중에 "내무국장" 을 "문화관광국장" 으로 하고, 문화예술진흥 기금조성설치운용 조례의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관을 "내무국장" 에서 "문화관광국장" 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

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생략"

5. 토론 요지 :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2조 ②항에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규정되어 있는데 동조③항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 중 현행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음.

6. 수정안 요지 :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2조 ③항중 "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" 를 "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 및" 으로 수정 조정

7. 심사 결과 : 수정 동의안 7인중 7인 찬성으로 동조례중 개정안 제2조 ③항의 조문중 "도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및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" 를 "도 교육청 중등 교육국장과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 및" 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도 원안대로 의결

8. 소수 의견 요지 : "없음"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음"